

# 「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5. 01 12(월) 평창군수(자치행정과장)

나. 회부일자 : 2015. 01. 13(화)

다. 상정일자 : 2015. 01. 19(월) 제208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
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자치행정과장 김진영)

-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준비체제 전환 및 민선6기 군정기조 뒷받침을 위한 조직 개편 단행과 맞물린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##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홍금숙)

- 본 조례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준비체제로의 전환과 민선6기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조직정비와 유사 연관 업무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.
- 주요 내용은
  - 문화관광과의 직제순을 변경하여 기획감사실 다음 순으로 조정하고,

- 환경과를 환경위생과로 명칭변경하고, 조직개편에 따른 기획감사실의 미래전략 정책개발 사무를 폐지하는 한편,
  - 부서별 세외수입 체납액 관련 업무를 재무과로, 주민생활지원과의 주거복지 관련 업무를 도시주택과로, 서울사무소 운영관리 업무를 농축산과에서 기획감사실로 변경 하고자 하는 것임.
- 조례안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,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순 변경이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 신속한 인력 배치 등 민원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**【붙임】**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.

## 평창군 조례 제 호

###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앞에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# 제2장 본청

제3조제1항 중 “기획감사실·주민생활지원과·종합민원과·자치행정과·재무과·문화관광과·경제체육과·환경과·산림과·안전건설과·도시주택과·동계올림픽추진단”을 “기획감사실·문화관광과·주민생활지원과·종합민원과·자치행정과·재무과·경제체육과·환경위생과·산림과·안전건설과·도시주택과·동계올림픽추진단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다목을 삭제하며, 같은 호 라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차목까지로 하고,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# 카. 서울사무소 운영

제3조제2항제5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, 같은 항 제6호를 제2호로 한다.

제3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# 6. 재무과

##### 가. 지방세 부과·징수 관련 업무

##### 나. 세출예산 집행 및 물품관리에 관한 업무

다.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관련된 업무

라. 개별주택가격 평가에 관한 업무

마. 재무행정에 관련된 업무

바. 세외수입 체납액 관련 업무

제3조제2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환경위생과

제3조제2항제1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사. 주거복지 관련 업무

제9조제1호바목을 삭제하고, 같은 호 사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자목  
까지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  
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2조제3항 중 “환경과장”을 “환경위생과장”으로 한다.

② 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2조제3항 중 “환경과장”을 “환경위생과장”으로 한다.

③ 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 
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환경과장”을 “환경위생과장”으로 한다.

④ 평창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5조제3항 중 “환경과장”을 “환경위생과장”으로 한다.

- ⑤ 평창군 물 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
제2조제2호 중 “환경과장”을 “환경위생과장”으로 한다.
- ⑥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9조제1호 중 “환경과장”을 “환경위생과장”으로 한다.
- ⑦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
제10조제3항 중 “환경과장”을 “환경위생과장”으로 한다.
- ⑧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9조제2항제1호, 제10조제4항제1호 중 “환경과장”을 “환경위생과장”으  
로 한다.
- ⑨ 산림수도 평창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
제20조제6항 중 “환경과장”을 “환경위생과장”으로 한다.